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23. -----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0. 8. 24.
 다. 상정일자 : 2000. 11. 1(제87회사하구의회임시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상정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사회복지과장 황 해룡)

현행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가 통합운영하기 위함

- 가.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심의토록 규정
 나. 위원회의 구성은 구의회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분야종사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등으로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
 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 공무원이 아닌위원의 회의참석, 업무와 관련한 출장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라. 위원회업무 수행중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현재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각종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중복위촉 및 예산낭비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 위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사회복지관리는 물론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것이며
- 특히 위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명시규정되어있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4개구에서 기히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타구에서도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하고자 함이 전반적인 추세임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 관련조례중 각위원회 조항은 삭제조치등 후속조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이해수의원 : 조례안제3조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위촉규정이 있으므로 따라서 동조 ④항을 신설 사회복지위원회위원 해촉규정 삽입
- 김상수의원 :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위원이기 때문에 조례안제4조 단서조항인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한다는 부분 삭제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수정의결

붙임 : 수정안 대비표 1부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p>(신설)</p> <p>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③(생략)</p> <p>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제4조(위원의 임기)----- ---(삭 제)</p>